

대구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2025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담, 안혜림, 이병희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찬

변 론 종 결 2021. 5. 6.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2018. 3. 22. 체결된 40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 7. 5.

접수 제1068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C은 2008. 2.경부터 대구 D단체에서 E일거리창출사업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경부터 2018. 3.중순경까지 재단법인 F에서 운영하는 G클럽에서 E일거리창출사업 등 보조금사업 관리 및 회계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하였다.

2) 피고 A은 C의 남편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동생이다.

나. C에 대한 형사 및 민사판결

1) C은 ‘2008. 2. 2.부터 2018. 3. 6.까지 피해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E일거리창출사업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보조금을 보관하던 중 합계 1,920,249,451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18. 7. 13.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68호)에서 징역 3년, 추징금 817,63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C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2019. 2. 12. 항소심법원(대구고등법원 2018노334호)은 추징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횡령 범행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2. 제1심법원(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5678호)에서 'C은 원고에게 횡령금 중 미변제한 767,630,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2020. 11. 2.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C의 제1아파트 매도, 피고 A의 제2아파트 매수 및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¹⁾ C은 2018. 3. 20. H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대구 동구 I 소재 J아파트 K호(이하 '제1아파트'라 한다)를 5억 1,6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2018. 3. 22. L, M으로부터 그들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¹⁾ (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를 4억 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8. 4.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은 2018. 6. 25. 피고 B과 사이에 제2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5.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채무초과 상태였던 C은 2018. 3. 22. 남편인 피고 A에게 제1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5억 1,6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을 제2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증여하였다.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은 원고에게 C으로부터 증여받은 4억 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증여계약의 존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C이 피고 A에게 4억 500만 원의 금전을 증여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과 피고 A 사이에 2018. 3. 22.자 금전증여계약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나머지 법률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은 2018. 3. 16.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에 H로부터 제1아파트 매매대금 5억 1,600만 원 전액을 교부받았다. 한편 C은 그 무렵인 2018. 3. 13.부터 2018. 4. 5. 사이에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441,377,569원을 제1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원고에 대한 피해금 변제공탁에 사용하였다. 제1아파트 매매대금 수령시기 및 위 각 변제시기를 고려하면, 위 각 변제금 합계 441,377,569원의 자금 출처는 제1아파트 매매대금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C은 아래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8. 7. 5.에도 원고를 위하여 5,00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는데, 그 시기적 근접성 등을 고려할 때 위 5,000만 원의 자금출처 또한 제1아파트의 매매대금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 A에게 증여할 금원 자체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순번	변제일자	채권자	금액	비고
1	2018. 3. 13.	(주)O	38,208,219원	피담보채무(대출원리금) 변제
2	2018. 3. 13.	(주)P	61,770,000원	피담보채무(대출원리금) 변제
3	2018. 3. 28.	Q(주)	291,399,350원	피담보채무(대출원리금) 변제
4	2018. 4. 5.	원고	50,000,000원	변제공탁금
5	2018. 7. 5.	원고	50,000,000원	변제공탁금
합계			491,377,569원	

② 피고 A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8. 3. 22. 제2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A은 2018. 4. 4. R 주식회사에게 제2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9,6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6,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제2아파트 매매대금 4억 500만 원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 A은 2018. 7. 5. 피고 B에게 제2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또한 제2아파트의 매매대금 조달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C이 피고 A에게 제2아파트의 매매대금 4억 500만 원 전부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과 상치된다.

③ C이 피고 A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증여를 하였음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A은 2018. 6. 25. 피고 B과 사이에 제2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C과 피고 A 사이의 2018. 3. 22.자 금전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4억 500만 원의 금전지급청구권을 보유하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C과 피고 A 사이의 2018. 3. 22.자 금전증여계약이 존재하고 그 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C과 피고 A 사이에 2018. 3. 22.자 금전증여계약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 또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훈, 판사 황윤철, 판사 남명수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아파트 S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T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1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층 세대전용다용도실 91.05㎡

1층 공동주택(아파트) 372.68㎡

2층 공동주택(아파트) 354.81㎡

3층 내지 21층 공동주택(아파트) 각 446.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광역시 동구 I 대 92,152.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U 철근콘크리트구조 84.8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2,152.1분의 50.07. 끝.

1) 대구 동구 I 소재 J아파트 N호